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 유)

제 목 퇴직(예정)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

1. 관련 :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-2409('17.8.22.)

2. 권익위에서는 최근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, 퇴직(예정)공직자에게 꽃, 선물, 기념패 등을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아 이와 관련한 허용범위 설명자료 및 카드뉴스를 각 부처에 송부하고 이에 대해 안내를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니,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사전에 이를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(붙임) 1. 퇴직(예정)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1부.

2. 퇴직(예정)공직자_카드뉴스(pdf)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

각실과, 소속기관, 공직유관단체, 고등교육기관전체, 국립초중고등학교, 대학법인, 대학원대학교, 대학원대학법인

주무관 안병민 서기관 엄진섭 민원조사 전결08/28
담당관 임용빈

협조자

수신 담당 김효관 팀장 실장

시행 민원조사담당관-5609 (2017-08-28) 접수 법무감사팀-435 (2017.08.30.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/ www.moe.go.kr
(어진동)

전화 044-203-6442 전송 044-203-6093 / abm1927@moe.go.kr / 공개